



# “상호접속기술기준” 과제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개요

- 본 고는 일본 TTC(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사회에서 상호접속 기술기준에 관해 검토한 후 그 내용을 TTC Report 98년 4월호에 게재한 것을 발췌, 번역 한 것입니다.

저자 : 中島 賢二/TTC 기획부장  
역자 : 권수천/ETRI 통신경영연구실 선임연구원  
TTA 망간상호접속 협동연구위원회 의장

지난 3월 19일에 개최된 제61회 TTC 이사회에서 “상호접속기술기준” 과제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검토위원회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접속의 기본규칙 형태에 대해” (1996년 12월 19일)의 주요 취지를 토대로 작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 영미의 동향조사를 포함하여 12번의 회의를 통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보고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현장(現狀) 조사와 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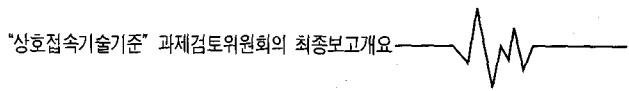
### (1) TTC표준에 관한 문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이라는 관점에서 TTC표준을 수정했다. 그 결과, TTC표준에는 타이머수치와 파라메타수치 등의 구체적 수치에 차이가 있고, 또 일부 신호의 사용방법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에 각기 다른 수치를 채용하게 되어, 사업자간 상호접속의 협정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상호접속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TTC표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一意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 (2) 사업자 상호접속협정의 문제

지금까지 사업자간 상호접속의 협의는 협의 당사자 쌍방의 사업환경, 서비스 조건 등에 따라 각각 요구조건이 다르고, 또 비공개로 인해 타사업자의 협정을 참조할 수 없어 협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협정이 비공개인 점은 각 항목을 일일이 협의하는 등의 이유로 상호접속협의가 장기화될 요인이 되었다.



上記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였고, 특히 지정전기통신사업자(NTT)에 대해서는 이것을 접속약관으로서 제정(공개)하도록 법제화하여, 비공개에 기인하는 과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二者間協議에 기인하는 차이의 과제는 남아 있다.

### (3) 사업환경의 변화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 장거리, 지역, 이동의 사업영역 하에서 서비스를 전개해 왔으나, 새로운 규제완화로 이를 异영역의 사업자간 합병이나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간 상호접속은 한층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주로 NTT 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던 상호접속협정에는 사업영역간에 차이가 있는데다가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어, 다양화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 (4) 해외조사로 얻은 사항

이 위원회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의 상호접속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영미에서의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양국 모두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공개되어 있었다. 이들은 국내(일본)에서의 상호접속체계를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또 영미의 표준과 TTC표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TTC표준 작성시에는 불필요하여 삭제된 항목이 최근 서비스의 고도화나 접속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호접속에 관해서 ITU-T권고로 삭제한 항목을 재검토하고, TTC표준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해결책 제안

국내의 사업자 상호접속의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영미의 실태조사를 참고로 검토한 결과 새로운 사업환경하에서 상호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기통신 사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동안에 상기에 기술한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을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이하와 같이 진행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① 대부분의 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기본 서비스 기능의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을 신속히 작성하기로 하고, 그 외 고도 서비스기능에 대해서는 기술의 성숙도, 서비스의 보급도, 시장요구를 고려하여 향후 검토한다.
- ②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경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의 애매성을 배제하여 일의적으로 기술한다.
- ③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의 작성작업에서는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의 항목을 추출하여 공통적인 기술조건을 정하고, 개개 기술기준을 상세히 작성해 그 작업결과를 토대로 실제 이용하기 쉬운 기술적 이용규정(일람)을 작성한다. (그림 참조)
- ④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은 종래의 TTC표준과 같이 민간 기준인 임의표준으로 한다.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의 작성조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회원에는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장관계자가 포함된 개방된 조직으로, 표준작성에 충분히 활동

한 실적이 있는 TTC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전기통신의 환경은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있어,

- ① 국제표준에 가능한한 준거하고, 국제표준보다 선행하여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② 상호접속의 국제적인 조화를 얻기 위해 작성활동과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内外에 공표할 것을 기본원칙으로서 삼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상호접속의 지속적인 추진노력에 대해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규제완화 하에서 신속히 대처해야 할 공통 인터페이스기준의 작성작업의 개시”에 대해 제언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진가는 “누구나 통신할 수 있다”고 하는 본질에 있다. 한편 경쟁하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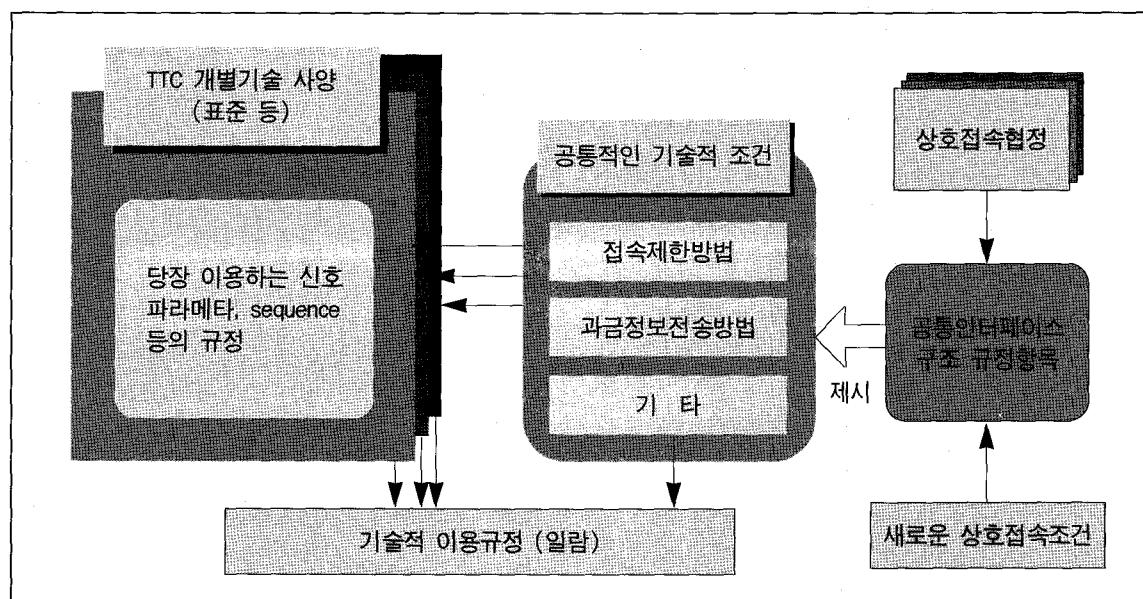
통신서비스는 “경쟁에 의한 각사업자의 사업 확대의 인센티브”와 “경쟁자간의 상호접속에 의한 사용자 편리성 확대”의 시장원리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규제”의 균형을 취해가며 발전하는 것이다.

개개 상호접속기능의 필요성은 시장환경에 따라 개별 판단되지만, 글로벌화하는 시장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상호접속의 기능과 범위는 시대와 함께 계속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이며, TTC로서도 장래 검토사항으로 삼은 고도 서비스의 관련항목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TC는 통신사업자 업계 등 시장측과 오픈된場에서 의견을 교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즈음하여 실태는 다양하지만 영미의 각종 상호접속 포럼이 참고가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간 상호접속의 원활화에 대해서는 ITU-T가 검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TTC도 그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TTC Report 98/4, p.3-4)



(그림) 공통인터페이스 구조에 관한 document류

